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36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충권 · 김민전 · 김성원
이인선 · 김정재 · 김기웅
최형두 · 유상범 · 서천호
엄태영 · 이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

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
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경우 해당 이용
자의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
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 여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 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 관리 적 조치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제76조(과태료) ① ----- -----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5의2. ~ 12. (생략) ② ~ ④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u> <u>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u> <u>아니한 자</u> 5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